

##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2. 4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시 소속공무원 2명

②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정한 대상자 중 1인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정한 대상자 중 1인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시의회의 추천이 없을 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경우는 시장의 재임명 또는 재위촉에 따라, 위원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재선임에 따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및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종전 자치단체”라 함은 충청북도·충청남도·연기군·공주시 및 청원군을 말한다.  
② “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③ “자문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을 말한다.

**제3조(미적용 자치법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된 것으로 보고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연기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연기군 영모 장려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연기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연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연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연기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운영 조례」
- 「연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
- 「연기군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연기군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조례」
- 「연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원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원군 출생아 복지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대체하는 자치법규)** ① 종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출산장려금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로 시행한다.  
② 종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노인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관련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로 시행한다.  
③ 종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국가보훈대상자·재향군인회 및 참전유공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로 시행한다.

**제5조(건설청 고시의 준용)** ① 건설청장이 수행하던 특별법 부칙 제8조에 해당하는 사무 중 건설청장이 행한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적용구역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고시의 준용은 사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다른 사항은 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허가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전 종전 자치단체 및 건설청에 접수된 인·허가 등 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종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건설청 고시와 서로 달라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자치단체 및 건설청의 자치법규 또는 고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자치법규 제정 시한)** ① 종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제3조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계속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시의 자치법규로 제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제1항의 기한까지 시의 자치법규로 제정·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시에서 시행 할 자치법규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8조(자문기관 위원의 임기 등)** ① 종전의 연기군이 설치한 자문기관 중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 등의 위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는 잔여 임기에 한해 시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자문기관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문기

관과 관련된 종전의 연기군 자치법규를 준용하여 운영하되, “군수”는 “시장”으로 “실·과·소장” 등은 관련업무의 “실·국장·담당관” 등으로 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7 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18 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② “자치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입법예고”라 함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시보”라 함은 시 또는 시정에 관하여 널리 알릴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 시장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절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치입법안은 소관부서의 장의 검토를 마친 후 법무담당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방침 결정)** 자치입법 소관 부서는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장으로부터 자치입법에 관한 방침결정을 받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자치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자치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취지
2. 입법의 주요 골자
3. 의견제출 기간·의견제출 부서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연락처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등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게재 내용은 입법예고문 외에 자치입법안 전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언론매체 또는 소속기관 등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자치입법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 등에 통보하여 시 소속공무원 전체가 자치입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자치입법 사항이 특정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 등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누구든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접수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자치입법안에 관하여 입법예고 외에 추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치입법안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등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청회 등을 개최한다.

**제10조(공포 방법 및 공포일)**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며, 시보가 발행된 날이 자치법규의 공포일이 된다.

**제11조(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치법규 정비)** ①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가 시행되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자치입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오랜 기간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
2.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4.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응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제13조(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치법규의 정비와 개선에 관련되는 자치입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치입법에 관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입법안에 반영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 또는 반영 계획을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발전 및 세수증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자치입법에 반영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훈령 등의 준용)** ① 시정 수행에 필요한 훈령·예규를 제정 시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및 제12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사업
2. 교육정보화 사업
3.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4. 시민 및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사업
5. 기타 교육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 규모)**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본예산 기준이며, 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다음해에 시행할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심사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② 학교장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감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상 사업 선정)** ①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③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교육감이 추천한 교육청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잔액의 반납)** 학교장은 교부받은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시장은 교육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을 교육협력관이라고 칭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20 호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부서 과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관련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그 밖에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자격(조직 및 시설 등), 구비서류 등 지정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원을 지정한다.

제9조(지정 · 운영절차)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서식)
2. 법인 정관 또는 동기부등본 및 법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4.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예산서
5. 최근 3년간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6.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계획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기관 중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학습관의 운영)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 ·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진흥원 및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 및 경비조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및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직원 배치) ① 진흥원 및 학습관에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등 필요한 자격을 갖춘 운영직원을 배치하여 한다.

② 진흥원 및 학습관에는 영 제22조 별표2의 평생교육사 배치내상 기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원장 및 학습관장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 및 학습관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5조(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진흥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와 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
  - 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 라. 『축산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 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
  - 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 아. 생산자 단체 또는 각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의거한 지원대상의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 제2조제3호에 의거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한다.
3. 급식 지원현황과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방안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
3. 지역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참여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정한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정한 유치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① 시장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2. 교육청 교육국장
3. 시의회 의원 2명
4. 교육감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5. 영양사단체 대표가 추천한 1명

6. 농업인단체 대표가 추천한 1명
  7.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장이 추천한 1명
  8.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총연합회장이 추천한 1명
  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급식비를 지원받는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급식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22 호

## 세종특별자치시 농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교육경비 지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의 농촌에 소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 범위) 시장이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4조(신청)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사업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명칭(학교의 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다)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제3호의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시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의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사업별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 및 시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23 호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란 민원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계기를 사용하여 증지에 갈음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현금으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자화폐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계기 또는 발급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발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기 및 발급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및 발급기 고유인영번호
-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및 발급기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읍·면·동 또는 사업소는 읍·면·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계기 및 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기 및 발급기 관리 책임자는 계기 및 발급기 사용으로 징수한 수수료를 시금고 또는 시금고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및 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中書

금일 발행내역

※ 결손자유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세의 감면·추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 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 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 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3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남아있는 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는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3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7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규정)		
관계 증명 서류		

「세종특별자치시세 감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미색 모조 80g/m<sup>2</sup>)

## 세종특별자치[人]

수신자

## 제 목 시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세 감면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세 종 특별자치시장

### 기악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전술 처리과명 = 익력번호(전수일자)

###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주소

/嘻嘻이[X] 주소

###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시세”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 ②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 ③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을 말한다)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1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읍·면·동장 또는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 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시세의 징수 순위)** 시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시세 등의 열람)** ① 미납시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시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 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 제16조(공탁 등)** ① 체납처분에 따라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시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세무공무원은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액 등 납부할 시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시세환급금에 대한 채권 압류를 하고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처리)** ① 시장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시장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혼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확인증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 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죄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죄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

할 수 있다.

**제28조(시세 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종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이나 그 밖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몫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시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 등록면허세 및 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따라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과 그 밖의 재산 중에서 납세 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 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배분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 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 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 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 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공 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140조에 따라 시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1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연장

**제42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하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 제44조(회생절차 진행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 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5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

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시세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세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납부통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동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 제4장 보칙

**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세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지방세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교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 교수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퇴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시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밖에 시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부득이 위원회 수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 ·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